	기관의장
선	
람	



호 외 / 2011년 9월 1일

발행자 : 익산시장 발행처 : 홍보담당관

[ 고	시
1 4	

• 익산시 고시 제2011-76호 익산시 농업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 승인 고시 ……… 1

### 【입법예고】

• 익산시 공고 제2011-1428호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### 【공 고】

• 익산시 공고 제2011-1404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지역 및 ···· 6 처리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범위 공고

회				
_,				
람				

·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://www.iksan.go.kr ·홍보담당관 TEL: 063) 859-5029

#### 익산시 고시 제2011-76호

# 농업기반정비사업 (개간) 시행승인고시

농어촌정비법 제9조7항 및 개간업무지침 제10조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.

- 1. 사업의 목적 :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 토지의 이용율을 증대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
- 2. 사업의 내용 및 구역
  - 내용 : 임야를 7,450㎡ 개간하여 밭작물 재배
  - 구역 :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4-9
- 3. 사업비 필요금액: 천원(사업시행자 부담)
- 4. 사업 예정 기간 : 2011. 9. 1 ~ 2012. 9. 30.
- 5. 사업의 효과 : 농업생산기반 확대로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
- 6. 사업시행자
  - 주소 : 익산시 신동 779-5 미성연립 2-102
  - 성명 : 신귀숙
- 7.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: 실음 생략
- 8. 기타 : 관계도서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기반조성계 비치
- 9.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산과 기반조성계(063-859-575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1. 9

익 산 시



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토지표시										
토지의 소재			지적	개간승인	토지대가					
YI	면	리	지번	지목	( m² )	면적(m²)	m² 당	금액	주소	성명
익산	삼기	용 연	4-9	임야	8,746	7,450				





#### 익산시 공고 제2011-1428호

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익산시 자치법규 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9월 1일

## 익 산 시 장

#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

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, 그정신을 널리 시민에게 고취하고자 하는 뜻에서 "참전호국수당"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소액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호국수당을 종전에는 1인당 **"월 3만원"**을 지급하던 것을 **"월 5만원"**으로 상향(인상)하여 지급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호)

- 붙임 1. 개정조례안 1부
  - 2. 신 · 구 조문대비표 1부

#### 3. 의견제출

- 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.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(참조: 사회복지 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사항
 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 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 570-753 익산시 시청로 1(남중동 60번지) 익산시청 사회복지과 (전화 063-859-5322, FAX 063-859-5072)
- 라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#### 4. 기타사항

그 밖에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사회복지과(063-859-53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제1호 중 참전호국수당 1인당 "월 3만원"을 "월 5만원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사업) 익산시장(이하 "시 장"이라 한다)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1. 참전호국수당(이하 "수당" 이라 한다) 1인당 월 <u>3만원</u> 지급 2. (생략)	제4조()

익산시 공고 제2011-1404호

#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지역 및 처리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범위 공고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4조(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)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지역 및 처리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

2011년 9월 1일

## 익 산 시 장

### 1.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요

○ 위 치 :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320-1번지 일원

○ 공사기간 : 2008. 12. ~ 2011. 6.(30개월)

○ 시설용량 : 700㎡/일

○ 처리방법



▶최종처리수의 방류수계 : 익산천 → 만경강 → 새만금

○ 처리대상 가축분뇨의 수거방법 : 차량수거

○ 설계유입수질 및 보증수질

(단위 : mg/L,개수/mL)

구 분	BOD	COD	SS	T-N	T-P	대장균군수
설계기준	30,000	20,000	30,000	5,000	800	-
보증수질	24	40	24	48	6	1,500이하

### 2. 처리대상 지역 및 처리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범위

- 처리대상지역 : 익산시 전역
- 처리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범위(우선순위)
  - I. 왕궁 특수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
  - Ⅱ.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지역 외 가축분뇨 배출시설
  - Ⅲ. 특수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
  - Ⅳ. 특수지역 외 허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
  - ※「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(익산시 조례1161호, 2011.7.8.)」및「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및 운영 관리지침」참조
- 3. 적용: 이 공고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일 부터 적용한다